

## 「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」

### 1.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 들고, 지원은 확대됩니다.

- ① **(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)**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. (24.1월)
- ② **(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)**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,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. (24.1월)
- ③ **(저금리대환 확대개편)** 저금리대환\* 프로그램의 ①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, ②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. (24.1분기중 시행예정)  
\* 소기업·소상공인의 7%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.5%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
① (기존) '22.5.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→ (변경) '23.5.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
② 일 년간 보증료 0.7%p 면제, 최대 0.5%p 추가금리 인하로 1.2%p 금융비용 경감
- ④ **(개인채무자 보호 강화)**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('24.10월)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,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. (24.하반기)
- ⑤ **(팩토링 확대)**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('23.12.21.)되어 신보의 팩토링\* 서비스를 지원대상(현행 중소기업)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. (24.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)

\*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,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

⑥ **(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)**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·포상, 진입·유지요건 개선, 비교·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. (‘24.2분기)

⑦ **(기업 회계부담 완화)**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,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\*(한국거래소 내 설치)가 운영을 개시합니다. (‘23.12월 기시행)

\*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

## 2. 금융이 편리해지고, 투자자·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.

⑧ **(배당제도 개선)**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. (‘24.1분기)

⑨ **(보험 비교·추천 플랫폼)**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·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. (‘24.1월)

⑩ **(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)** 저축은행도 “금융앱 간편모드\*”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. (‘24.1분기)

\* [금융앱 간편모드]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,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

⑪ **(실손보험 청구 전산화)**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(병·의원, 약국)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. (‘24.10월)

\* 시행일 : (‘24.10.25일) 병원, (‘25.10.25일) 의원, 약국

⑫ **(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)**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(금감원)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. (‘23.12월 기시행)

⑬ **(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 시행)**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\*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, 이에 대한 감독·제재도 이루어집니다. (‘24.7월)

\* 이용자 예치금·고유재산 분리,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, 해킹·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

⑭ **(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)**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\*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,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. (‘24.9월)

\*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,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

### 3.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.

⑮ **(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)**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. (‘24.1월)

⑯ **(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)**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·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,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·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. (‘24.1월)

⑰ **(DSR 정교화)** ‘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·혼합·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‘스트레스 DSR’\* 제도가 시행됩니다. (‘24.2월 이후 단계적 시행\*\*)

\* ‘과거 5년 중 최고금리 - 현재금리 차(상하한 1.5%~3.0%)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

\*\* 금융이용자의 불편, 업권별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시행

①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(‘24.2.26일) → ‘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

② ‘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%, 하반기는 50%, ‘25년부터는 100% 적용

⑱ **(금융보안규제 선진화)**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·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. (‘24.1분기)

#### 4.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.

- ① (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)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,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,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. (‘24.1월)
- ② (가상자산 회계·공시 강화)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·자산 인식을 금지하고,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·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. (‘24.1월)
- ③ (내부통제 강화)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,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. (‘24.하반기)
- ④ (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) 은행의 수익, 비용,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‘경영현황 보고서’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 (‘24.2분기)
- ⑤ (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)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. (‘24.상반기)

☞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세부내용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[붙임]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 양병권 (02-2100-2831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 강영수 (02-2100-2590)
		담당자	서기관 정태호 (02-2100-2955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 윤우근 (02-2100-2651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화세 (02-2100-26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은진 (02-2100-2642)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 이석란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욱 (02-2100-2531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1.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, 지원은 확대됩니다.</b>				
1	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.5.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중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까지 확대</li> </ul>	확대 시행 ('24.1월)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2)
2	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「청년도약계좌」 운영중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</li> <li>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</li> <li>전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 여부 결정</li> </ol>	「조세특례제한법」 ('24.1월)	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(02-2100-1686)
3	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2.5.31.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</li> <li>최대 5.5% 금리의 대출로 대환 / 보증료 0.7%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.5.31.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</li> <li>일 년간 최대 5.0%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</li> </ul>	「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운용지침」 ('24.1분기중)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2)
4	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·시행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,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·의무관계*를 명확히 규정</li> </ul> <p>* 채무조정요청권, 연체부담 경감 등</p>	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('24.하반기)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02-2100-2612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6	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확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 팩토링 운영 중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·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견기업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 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제한</li> </ul> </li> </ul>	「신용보증기금 법령」 (‘24.1월)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(02-2100-2862)
5	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·공시 강화,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·포상 강화, 진입·유지요건 등을 개선</li> </ul>	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 개정 (‘24.2분기)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02-2100-2514)
7	기업 회계부담 완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‘24년부터 도입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 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2조 ↓: ‘24 → ‘29년, 5천억 ↓: ‘25 → ‘30년</li> </ul> </li> <li>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설치</li> </ul>	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(‘23.12월 기시행)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(02-2100-2693)

## 2. 금융이 편리해지고, 투자자·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.

8	배당제도 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,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 확정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先 배당액 확정, 後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산 배당 절차 개선</li> </ul>	상법 유권해석 (‘24.1분기)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(02-2100-2644)
---	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연 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9	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 제한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·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제고 기대</li> </ul>	서비스 출시 (‘24.1월)	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 2945)
10	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드 (“간편모드*”) 출시(‘23.6월말)</li> <li>* [간편모드]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행권에 도입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*(‘24.1분기)</li> <li>*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합앱 (SB톡톡플러스) 內 간편모드 적용</li> </ul>	확대 시행 (‘24.1분기)	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 (02-2100- 2631)
11	실손보험 청구 전산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손보험 청구시,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한 방식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(병·의원·약국)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</li> </ul>	보험업법 개정(‘23.10월)  * 시행일 : (‘24.10.25일) 병원 (‘25.10.25일) 의원·약국	금융위원회 보험과 (02-2100- 2962)
12	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감원에 사전등록 필요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(법인), 여권번호(개인)를 토대로 국내 상장증권 투자</li> </ul>	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(‘23.12월 기시행)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(02-2100- 2644)

연번	제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3	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·조치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용자예치금·고유재산 분리, 콜드월렛 보관, 보험·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, 임의적 입출금차단 금지 등</li> </ul> </li> <li>②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중요정보이용·시세조종·사기적 부정거래·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) 규제</li> <li>③ 금융당국 감독 및 과징금·과태료·형사별 부과 근거 마련</li> </ol>	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(‘24.7.19.)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(02-2100-2534)
14	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자 보호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존재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,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여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축소</li> <li>② 등록된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(선불충전금 별도관리, 안전자산 운용 등)</li> </ol>	개정 「전자금융 거래법」 시행 (‘24.9월)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(02-2100-2621)
<b>3.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.</b>				
15	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<b>대부업자, 여신 금융기관, 공공기관</b> 등으로 한정</li> <li>- 이에,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우려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<b>외화대출채권</b>의 경우,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</li> </ul>	「대부업법 시행령」 개정 (‘24.1월)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(02-2100-2514)

연 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16	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역외금융회사 투자·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</li> <li>○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 진출규정 및 업권법에 따라 각 신고·보고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역외금융회사 투자·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</li> <li>○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권법에 따른 신고·보고시 해외진출규정 신고·보고의무 면제</li> </ul>	「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 (‘24.1월)	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(02-2100-2893)
17	전 금융권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.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수준을 통해 DSR 대출한도 산정하여 대출 취급 후 금리상승시 차주 상환부담 급증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미래금리 위험을 반영하여 DSR 대출한도 산정시 가산금리부과 *과거 5년중 최고금리 - 현재금리 기준으로 하되 고정금리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</li> <li>② 금융이용자 불편 등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 *’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%, 하반기 50%, ’25년 100% 적용 등 *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(2.26일) → ’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</li> </ol>	「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」 (‘24.2월)	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(02-2100-1692)
18	금융보안규제 선진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보안규제가 구체적 금융보안 수단을 미시적으로 열거하여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 신기술 채택 등에 애로로 작용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“규칙(Rule) → 원칙(Principle) 중심”으로 감독규정을 합리화하여 자율보안의 토대 마련 (수범사항 : 293개 → 166개로 축소)</li> <li>② 재해,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의 금융전산 복원력(Resilience) 강화 (중소금융사·전금융자 등에 대한 재해 복구센터 구축 의무 신설 등)</li> </ol>	「전자금융 감독규정」 (‘24.1분기)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(02-2100-2811)

연 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<b>4.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.</b>				
19	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가능</li> <li>* 미공개중요정보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</li> <li>○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이 되는 <b>부당 이득액 산정방식이 미비</b></li> <li>○ 자진신고자에 대한 <b>제재 감면</b> 제도가 <b>부재</b>하여 내부자 진술·증거 확보에 애로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 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<b>부당 이득의 최대 2배</b>를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</li> <li>②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<b>부당이득</b>(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) <b>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</b> (총수입-총비용)하고 <b>위반행위별</b> 구체적인 산정 기준 규정</li> <li>③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제재·적발을 위해 위반행위를 <b>자진신고·자수</b> 하거나 <b>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·증언</b>하는 경우 <b>형벌·과징금을 감면</b></li> </ul>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(‘24.1월)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(02-2100-2862)
20	가상자산 회계·공시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계·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부재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행기업의 <b>자의적 발행수익·내부 유보(리저브)자산</b> 계상 금지</li> <li>○ 유통량 등 <b>백서의 주요내용을</b> 주석 <b>의무공시</b>(외부감사 대상)</li> </ul>	「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」 (‘24.1월)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(02-2100-2693)

연 번	제 목	주요 변경내용	관련법규 (시행일)	담당기관 (연락처)
21	금융권 내부통제 강화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배구조법」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도 도입</li> <li>②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 부여</li> </ul>	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(‘24.하반기)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(02-2100-2824)
22	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	<p><b>(현행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샌드박스 홈페이지(핀테크지원센터)에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불가</li> </ul> <p><b>(개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샌드박스 심사 진행 단계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</li> </ul>	홈페이지 개편 (‘24.상반기)	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(02-2100-2859)
23	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	<p><b>(신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행의 수익, 비용, 배당 등 경영현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별 경영현황* 자율공개 실시</li> </ul> <p>* (주요 공개항목) 이자·수수료 이익, 예대금리차, 성과급·희망퇴직금, 주주배당 등</p>	(‘24.2분기)	금융위원회 은행과 (02-2100-2955)